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두채경영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을 전문경영체나 벤처농기업 형태의 지식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본다

농업과 전·후방산업과 융합의 필요성

벤처농기업의 육성은 농업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다양한 2·3차 산업의 개발을 통해 농업의 효율성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농외소득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벤처농업은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농용자재 등 농업관련 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관련정책, 그리고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본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농업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분명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을 전문경영체 형태의 지식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이 무엇이고, 우리 농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3가지 유형의 벤처농기업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차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벤처농기업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 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하며,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新生)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농업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벤처농기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유형 I)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유형 II),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I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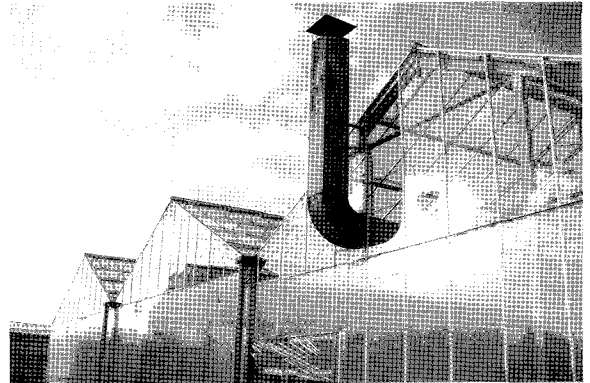
복 추진되고, 시책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창업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유형(I)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2002년 6월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304개(3.0%) 업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나타나듯이 농업관련 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관련 산업의 벤처기업들은 IMF 이후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연구에서 벤처농기업체의 경영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 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문제로 들고 있다.



벤처농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농정차원의 정책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형(I)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유형(II)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체로 인증하여 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신규창업업체 등 벤처농기업은 창업단계별로 당면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농촌

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벤처]

벤처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은 그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농업생산 및 가공·유통, 농용자재 등 농업관련 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벤처농기업 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을 결여한 채 정부 부처간 벤처관련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과 충분한 조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인증을 받은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업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농가(농업계에서 는 이를 ‘벤처농업’ 이라고 함)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경영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차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시작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농기업을 이해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 고수익 -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신생기업”을 뜻한다.

벤처농기업도 이와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① 업종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 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 ② 창업연도나 기업규모에 있어서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新生)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농업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③ 사업주체에 있어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非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농림부가 사용하는 ‘벤처농업’ 과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지만 농업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전문경영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벤처농기업’ 이란 용어로 정리하였다.

(2) 벤처농기업에는 사업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유형 I)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유형 II),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I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업체의 성격이나 창업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

II ·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태의 벤처농기업이 있을 수 있으며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점 해결이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벤처농기업 육성이 갖는 의미로는 ① 다양한 농외사업 및 농외취업 기회의 창출로 농외소득을 개발하고, ② 전통적인 농가를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며, ③ 벤처농기업을 통한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④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들 수 있다.

즉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관련 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상업적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기업형태의 창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이농(離農)과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농가를 전문경영체로 대체하고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관련 산업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시책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 치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평가기관 13개 중에 농업이나 농업관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으

며, 275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창업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5) 농업부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유형 (I)에 맞추어 벤처농기업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 초부터는 기존의 정책대상에 유형 (II) 및 유형 (III)을 추가하여 ① 벤처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 ②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③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가 이제까지 농업생산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농업관련 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정책에 포함하였다는 사실은 높이 살 만하지만 자칫하면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6) 2002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수산업 및 광업분야의 벤처기업은 27개(0.2%)에 불과하다.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304개(3.0%) 업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농업관련 산업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벤처농기업체의 업종은 식품가공(39.8%), 농기계 및 농자재(16.8%), 환경 및 신소재(16.8%), 생명공학(16.4%)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창업시기별로는 1990년 이전과 1990~1997년 기간의 창업이 각기 4.9% 및 20.1%인데 비해 1998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법에 힘입어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련 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방법별로는 기술평가기업(50.7%), 신기술개발사업(34.9%), 벤처캐피탈투자기업(10.5%), 연구개발투자기업(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벤처기업에 비해 신기술개발기업이 많은 반면 연구개발투자기업이나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벤처기업의 경우 72.7%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데 비해 농업관련 산업체는 41.8%만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7) 벤처농기업체의 경영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형태는 주식회사가 56.4%, 개인사업체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는 농산물가공 및 유통업 52.4%, 농업생산 23.8%, 투입자재산업 21.4%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본금 규모별로는 1~3억원 36.8%, 0.5~1억원 29.0%, 0.5억 원 미만이 13.2%이며, 종업원 수는 평균 14.9명, 그중 연구개발 인력은 2.8명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한 벤처농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는 시장 및 관련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나친 규제,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판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

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문제로 들고 있다.

(8) 벤처농기업이 가진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수집·발표하는 2차 자료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량적인 실태조사에 의해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벤처농기업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요인으로는 ①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②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신상품의 개발, ③ 제품의 가격, 생산방식 및 이미지 등의 차별화, ④ 회원제도입이나 네트워크 구축, 고객관계관리(CRM: consumer relation management) 활동,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등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⑤ 대형쇼핑몰과 연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판매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애로사항으로는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의 어려움, 창업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한, 자금과 판로부족, 창업보육기회의 한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농업 관련 산업분야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어렵다는 점을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9) 벤처농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농정차원의 정책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부문은 자본규모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산재한 농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률이 높은 반면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업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수단을 정비하여 농정차원에서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형(I)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유형(II)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체로 인증하여 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신규창업업체 등 벤처농기업은 창업단계별로 당면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능력 훈련을 하고,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며,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및 시장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②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④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⑥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농업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분명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을 전문경영체 형태의 지식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벤처농기업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벤처농기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초기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탄식을 하는 이 때 다양한 벤처농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과연 무엇이 이들을 성공에 이르게 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미래 우리농업과 농촌의 존립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㉔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1572)

저자 : 이동필 김중선 전일송(2002. 12)